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 10. 15.

하동군의회의장 강 희 순

1. 조례명: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군수의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군정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군수의 임기와 연계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방법

- 1) 팩스: 055-880-2939
- 2) 하동군의회 홈페이지(<http://www.hdcl.go.kr>) 열린마당(의회에 바란다)
- 3) e-mail: uu1028@korea.kr

붙임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조항)	찬 성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군수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군수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제3조의2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u>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중에 군수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군수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임명 당시의 군수가 연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임기를 유지한다.</u> <u>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임 군수가 새로운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 <u>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임기가 연장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새로</u>

<u>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u>
